



교육부

2023년
대학혁신지원사업(일반재정지원)
기본계획(안)

2023. 3.

교 육 부
(대학규제혁신국)

목 차

I.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	1
II. 2023 년 추진내용	4
1. 중점 추진방향	4
2. 세부 지원계획	5
3. 성과평가 계획	8
4. 2차년도 사업 및 성과 관리	10
III. 기타 행정사항	12
IV. 향후 일정	13
 [붙임] 포물러 교육여건 지표 정의	 14

I.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

1

기본방향 및 추진전략

사업 목표

대학별 자율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
양질의 대학 교육 및 미래 인재 양성

기본 방향

적정 규모화, 특성화를 포함한 대학별 자율 혁신 추진 지원
지역 수요, 대학 역량 등에 따른 다양한 발전 전략 뒷받침

세부 추진 전략

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의 질적 혁신과 학생 지원 강화

■ 자율성과 책무성의 조화

- 사업비 집행 자율화
- 대학별 운영 성과와 인센티브와의 연계 강화
- 대학별 재정지원사업 자체 관리·평가 체계 구축

■ 대학별 적정규모화 및 질적 혁신 촉진

-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(적정규모화 포함) 수립
- 대학 적정규모화 실적 점검 및 인센티브 부여

■ 산업·사회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

- 첨단분야 부처 협업 혁신인재양성
- 지방대학 역량 강화
- 일반재정지원 연계 및 제도적 지원

대학내 기반

- 대학혁신지원사업(자율혁신계획)을 중심으로 한 사업 간 유기적 연계
- 대학 내 정부(중앙·지자체) 재정지원사업의 총괄 관리 체계 구축

- ❖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인재를 적시에 양성하기 위한 대학 혁신이 고등교육의 당면 과제
- ❖ 학령인구 감소, 재정 악화 등 대·내외적 환경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고등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
 - ☞ 안정적 재정지원을 중심으로, 미래 인재양성 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**인재양성 시스템 체질 개선 추진**

□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 구조

사업유형	사업내용	비고
I 유형 (일반재정지원)	▶대상: 일반재정지원대학(사립·국립대법인 등 117교) * 국립대학 36교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이관 ▶내용: 질적 혁신 및 적정규모화 지원 ▶예산: ('22) 7,530억원 → ('23) 8,057억원	자율혁신 계획을 통한 연계
II 유형 (부처 협업형 인재양성)	▶대상: 일반재정지원대학 중 선정대학 ▶내용: 부처 협업형 신산업 분야 혁신인재양성 ▶예산: ('22) 420억원 → ('23) 1,052.84억원	
III 유형 (지방대학 활성화)	▶대상: 일반재정지원대학 중 비수도권 사립대학 ▶내용: 지방대학의 특성화 및 역량강화 ▶예산: ('23) 1,900억원(신규)	

※ II·III유형은 별도 계획으로 안내

□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

- (기본 방향) '22년 대학별 기 수립한 자율혁신계획('22~'24)을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수정·보완
- (결과 활용) '23년 교육혁신 전략을 포함하여 대학별 자체 성과 관리 실적 등을 점검하고 인센티브 부여

※ 연차평가 실적보고서 접수 시 '23년 교육혁신 전략을 반영하여 제출하고, 평가결과 및 사업비 확정 후 '23년 자율혁신계획 제출

※ 교육혁신 전략 세부 평가 기준 및 방식은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 안내

- ☐ '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을 통한 '22~'24년 일반재정지원대학(147교) 선정 (일반대 '21.9.3. / 교대·교원대 '22.2.17.)
- ☐ '22~'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안내('21.12.29.)
- ☐ 기본계획 시안 관련 대학 관계자 공청회 실시('22.1월)
- ☐ '22~'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('22.2.4.)
- ☐ '22~'24년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제정('22.2.14.)
 - ※ 기존 1주기('19~'21)의 집행·관리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'22~'24년 집행·관리기준 마련
- ☐ 추가선정 일반재정지원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계획 수립('22.3.4.)
- ☐ '22~'24년 일반재정지원대학(6교) 추가 선정('22.6.3.)
- ☐ 대학별 '22~'24년 자율혁신계획(사업계획서) 접수('22.5월)
- ☐ 대학의 자발적 적정규모화 계획('22~'25)에 따른 적정규모화 지원금 대학별 교부액 확정·배분('22.9월)
- ☐ 혁신지원사업 추진 및 개편 관련 의견수렴('22.12.~'23.2.)

< 주요 의견수렴 결과 >

- 혁신지원사업 전문가 간담회('23.1.)
 - 대학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개편 방향을 사전 안내 후 적용 필요. 향후 성과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정량지표 추가 개발 필요
- 사업비 집행기준 개선 관련 간담회('23.1.)
 - 대학 재정난을 고려하여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, 실질적인 자율 집행을 위해 성과평가 시 집행 실적 지표 제외 필요
- 대학혁신 성과포럼 사업단장 간담회('23.2.)
 - 성과평가를 통한 대학 줄세우기를 지양하고, 권역 내 대학 간 공유·협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 필요

Ⅱ. 2023년 추진내용

1

중점 추진방향

□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두터운 일반재정 지원

- (특별회계) 대학의 자율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 지원을 1.4배 수준으로 확대

* 1교당 평균 지원 규모: 49억 원 → 69억 원

- (지방대학) 학생 미충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대학이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혁신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확대

*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1,900억 원 추가 지원(비수도권 사립대학 대상)

□ 대학의 폭넓은 자율성 보장 및 책무성 확보

- (집행기준) 상위법령에 따른 집행기준 외 별도 사업비 지침을 통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대학의 실질적인 재정집행 자율성* 제고

* 투입 지표인 사업비 집행실적은 성과평가에서 제외하고 대학의 핵심 성과 위주로 평가

- (성과평가) 정부 주도 대면(정성)평가 축소 및 지표별 평가 전환으로 대학의 부담은 낮추되,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확대

※ (기존) 지표별 점수 합산 후 최종 등급 부여 → (개편) 지표별 등급 부여 및 최종 등급 미부여

□ 규제없는 과감한 지원을 위한 2024년 이후 사업 개편 준비

- (포플러 사업비)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을 야기하는 투입 중심 지표는 축소하고, 핵심 교육여건을 중심으로 사업비 배분

※ ('24)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 제외 등 → ('25) 전면 개편

- (성과관리) 대학 혁신 영역별로 대표성·타당성 있는 정량 성과 지표를 발굴하여,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 부여에 활용('25~)

※ 연구·산학협력·평생교육 등 영역별 정량지표를 개발하여 정보공시에 반영

2

세부 지원계획

1. 사업개요

□ 지원기간 및 대상

- (지원 기간) '23.3.1.~'24.2.29.
- (지원 대상) 일반재정지원대학 117교 (사립 114교, 국립대법인 2교, 공립 1교)
- (지원 내용) 대학이 자율 혁신을 통해 교육·연구·산학협력·평생교육 등 총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블록펀딩 방식으로 지원
- (지원 규모) 8,057억 원 ※ 사업관리운영비 57억 포함

< '23년 지원대상 및 사업비 현황 >

구분	'22년	'23년	증감
지원대상	일반재정지원대학 153교 (국/공/사립/국립대법인)	일반재정지원대학 117교 (사립/국립대법인/공립)	△36교*
총 사업비	7,530억원	8,057억원	527억원
교당 평균 지원단가*	48.75억원	68.38억원	19.6억원

* 일반재정지원대학 중 국립대 36교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포함하여 지원

** 사업관리비 제외 대학지원금 기준

2. 사업비 배분

□ 권역별 배분

- (권역별 배분) 사업비 총액을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5개 권역별*, '학부 재학생 수(50%)'와 '학교 수(50%)'를 기준으로 배분

* 수도권 / 대구·경북·강원권 / 충청권 / 호남권 / 부산·울산·경남권

- (사업비 구분) 권역별 총액 규모 내에서 포물러 사업비(70%) 및 성과평가 인센티브 금액(30%)로 구분하여 배분

< '23년도 사업비 배분 >

포물러 사업비				+	성과평가 인센티브	=	대학별 지원액
기준경비		규모지수	교육여건				
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	×	√재학생수	×				
			재학생 총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				

▶ 재학생 수·학교 수에 따라 권역별 배분

□ 포물러 배분

- (배분 기준) 권역별 총액 규모 내에서 대학의 규모(재학생 수)와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배분

구 분		내 용
기본 배분 지표	기준경비	■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: 1,715.1만원
	규모지수	■ 학부 재학생 수의 제곱근
	교육여건	■ 재학생 총원율, 전임교원 확보율, 교육비 환원율을 표준화(평균1, 표준편차0.4)한 각 변환점수 합으로 교육여건 점수* 산출 * 교육여건 점수 = 재학생 총원율 변환점수 + 전임교원 확보율 변환점수 + 교육비 환원율 변환점수 $\text{지표별 변환점수} = 1 + \left(\frac{\text{지표별 점수값} - \text{지표별 평균값}}{\text{지표별 표준편차}} \right) \times 0.4$ ※ 지표별 변환 점수의 최저점 0.2점, 최고점 1.8점으로 설정(±2표준편차)

※ 기준경비, 규모지수, 교육여건은 '22년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

※ '24년 포물러 배분기준은 전임교원 확보율을 제외하고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개정 예정(의견수렴 후 확정)

□ 인센티브 배분(안)

- (성과평가) '23년 교육혁신 전략 및 '대학 자율혁신계획'에 따른 1차년도 사업추진 실적(자체 성과관리 등)에 대하여 연차평가 실시
- (결과활용) 각 권역별 지원금의 30%를 연차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로 지급

3. 사업비 집행기준

□ 사업비 편성 방향

- 대학에서 수립한 자율혁신계획에 따라 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·연구·산학협력·평생교육 등 학생 지원 영역을 우선 편성
 - 우선 편성 이후 대학이 필요로 하는 혁신지원사업 이외 인건비 및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를 총액 한도 내 편성 가능
- ※ 향후 대학 재정 여건 및 사업비 편성집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기준 보완 검토

□ 집행기준 개선

- (원칙) 상위법령에 따른 집행기준 외에 별도 사업비 지침을 통한 규제(집행불가 항목)는 최소화하여 대학의 자율성 제고
 - (인건비) 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에 집행 가능(총액 한도 25%)하나, 국고 사업비를 통한 기존 교직원 임금 인상은 불가
- ※ 기존 교직원의 일괄 임금 인상 및 명예퇴직금 등 목적으로는 활용 불가
- (그 밖의 사업운영경비) 공과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경상비성 경비를 10% 한도 내 편성 가능

<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 및 한도 >

비 목	집행불가 항목	총액 한도
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	-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	-
실험·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		-
장학금	- 학자금 이중지원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	-
교육·연구 환경 개선비	- 건물의 신축 투자 및 토지 매입 제한	-
인건비	- 급여, 수당 등 통상 임금이 아닌 명예퇴직금 - 기존 교직원의 임금 인상 목적 ※ 기존 교직원 인센티브는 총 사업비의 5% 이내로 제한	25%
그 밖의 사업운영경비	-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	10%

□ 평가 개요

- (방향) 先재정지원 및 後성과관리 체제 전환을 위해 정부 주도 대면(정성)평가는 축소하고, 지표별 평가로 전환하여 대학의 부담은 낮추되,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확대
- (대상/시기) 일반재정지원대학 117개교 / '23. 5~6월중(예정)

□ 평가 지표

- (정량평가) 유지충원율의 핵심 요소인 신입생·재학생 충원율 지표 평가를 통해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

※ 신입생충원율(%) = [정원 내 입학자(명) / 정원 내 모집인원(명)] * 100

재학생 충원율(%) = [$\frac{\text{정원 내 재학생 수} + \text{조기졸업자 수}}{\text{정원 내 학생정원} - \text{학생모집 정지인원}}$] * 100

* 충원율 관련 고려사항: 첨단학과 신증설, 편입학 선발,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등 별도 보정(추후 안내)
※ 2021~2022학년도 대학정보공시 자료 및 대학별 제출자료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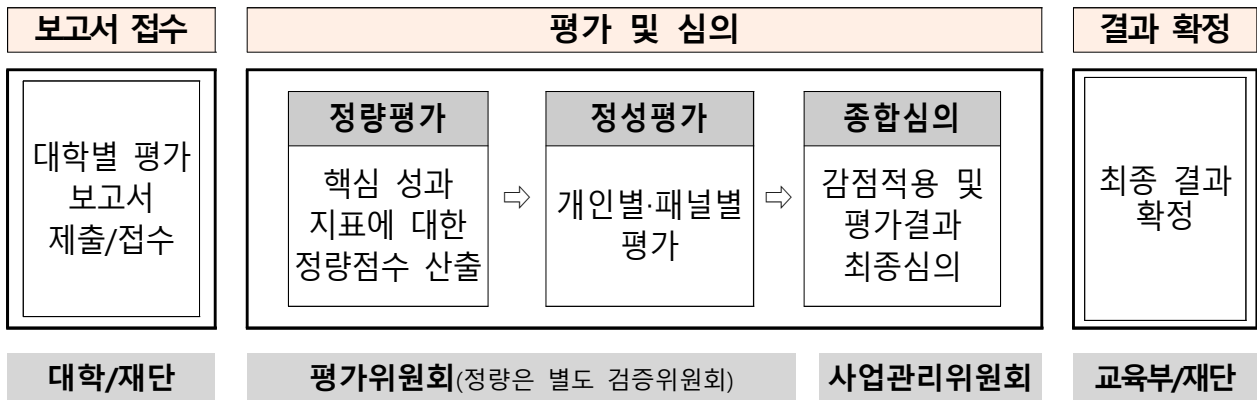
- (정성평가) 대학이 제출한 교육혁신 전략과 1차년도 대학의 자체 성과관리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

< 평가영역 및 지표별 평가내용(안) >

영역	지표별 평가내용	비고
혁신 전략	1. 교육혁신 전략	
	•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 혁신 추진 전략	정성
핵심 교육성과	2. 유지충원율	
	• 신입생·재학생 충원율	정량
자체 성과관리	3. 자율성과지표 관리 및 환류 실적	
	• 자율 성과지표 관리 및 학내 성과관리 실적	정성

※ 지표별 평가내용 및 배점은 평가 시행계획을 통해 확정 안내

□ 평가 절차(안)



※ 기존 재정지원사업(PRIME, CORE, WE-UP) 사후관리 불이행 시 감점 적용

※ 절차·방식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평가 세부계획 안내 시 확정·안내 예정

□ 평가결과 및 활용

- (결과 산출) 평가영역별로 패널 내 순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, 등급별 배분 가중치에 영역별 배점 비중을 곱하여 합산

- (지역 가중치) 수도권 제외 4개 권역별 S등급 대학 중 학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 대학은 '지역 강소대학'으로 보아 등급 가중치를 1.6로 상향

※ 등급별 대학 비율 및 배분 가중치 : S(25%, 1.5), A(25%, 1.3), B(25%, 1.0), C(25%, 0)

※ 정량지표(유지충원율)는 등급 부여 없이 표준화(평균1, 표준편차0.4)값을 가중치로 적용(최고점 1.8, 최저점 0.2)

- (인센티브) 권역별 인센티브 지원금을 대학별 포물러 및 성과평가 결과 가중치를 고려하여 인센티브 배분

<성과평가 결과 예시>

- (내용) 평가 영역(3개)별로 등급을 부여(대학의 종합 등급은 미부여)

대학명 \ 영역	혁신 전략	자체 성과관리	유지충원율
ㄱ대학	S	A	1.4
ㄴ대학(지역 강소대학)	S	S	1.8
ㄷ대학	C	C	0.2

- 대학별 인센티브 가중치 산출(최소 0.06, 최대 약 1.66) * 영역별 가중치(배점)는 예시

- (ㄱ대학) $1.5(S) \times 0.4 + 1.3(A) \times 0.3 + 1.4 \times 0.3 = 1.41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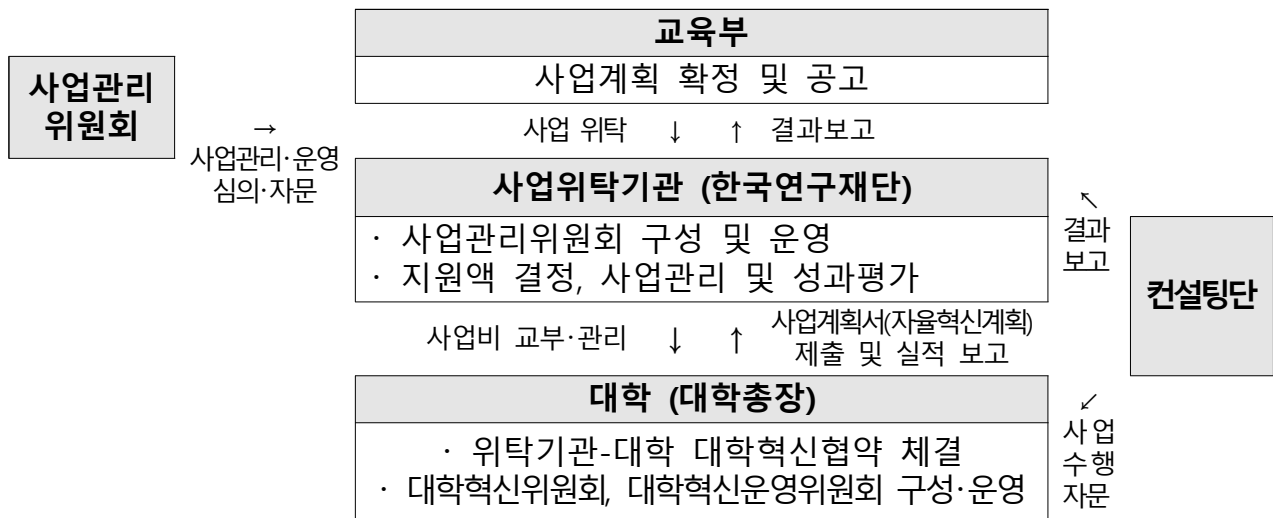
- (ㄴ대학) $1.6(S) \times 0.4 + 1.6(S) \times 0.3 + 1.8 \times 0.3 = 1.66$

- (ㄷ대학) $0(C) \times 0.4 + 0(C) \times 0.3 + 0.2 \times 0.3 = 0.06$

- (성과 인센티브) 포물러사업비 * 인센티브 가중치 * 권역별 보정상수

※ 구체적인 성과평가 결과 산출 방식은 평가 세부계획 안내 예정

□ 사업 주체별 역할



- (교육부) 사업 기본계획 수립·공고 등 사업 총괄
- (사업위탁기관)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 관리·운영 수행
 -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분석,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·관리 및 컨설팅단 구성·운영 등
- (사업관리위원회) 사업 관리·운영 자문, 지원대학별 지원금 확정,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주요사항 심의
- (컨설팅단)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및 재정 투자 계획 검토 및 자문
 - ※ 대학관계자, 연구원 등 고등교육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
 - 대학혁신협약 체결 이후 자율혁신계획의 타당성, 재정 투자 계획,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, 계획 수정·보완 자문·권고
- (대학) 지원대학의 장은 위탁기관과 '대학혁신협약' 체결
 - 협약 기간 및 당사자, 의무이행사항 및 불이행시 조치사항, 사업비 관리·사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

□ 사업비 교부 및 집행

- (교부) 지원예산은 기관(대학총장)에 총액(Block Grant)으로 교부하며 교비회계(대학회계)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
- (집행) 대학에 배분된 사업비는 '자율혁신계획'에 부합하도록 집행
 - 사업개시일('23.3.1.) 이후부터 사업비 교부 전 대학 자체 재원으로 선(先)집행한 예산은 사업비 교부 후 대체 처리 가능
- (점검) 집행 실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, 부당집행 의심사례 발생 시 재정집행 적절성 판단을 위한 심의 기구 운영(사업위탁기관)

□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

- (정산) 국고 지원금은 매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되 사업비의 10%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월 가능
 - ※ 단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받아 이월 범위 조정 가능
 - ※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는 사업 종료 시 반납
- (결과보고) 대학은 연차별 사업종료 시, 결과보고서(사업비 집행내역 포함) 제출하며, 성과평가 보고서(성과목표 달성여부 포함)를 첨부하여 제출

□ 성과 관리 및 확산

- (자체 성과관리) 자율혁신계획의 효과적인 이행 및 성과 창출을 위해 학내 성과관리 전담기구*를 구축하여 자체 성과관리 추진
 - * 예시: 성과지표 설정,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등을 위해 성과관리본부(IR) 구축
- (우수사례 확산) 우수 사례 발굴·확산을 위해 대학별 성과실적을 교내 홈페이지에 자율적으로 공시하고, 성과공유회 개최

□ 국고지원금 책무성 확보

- ① 사업 목적 외 사용, ② 횡령 등 부당 집행이 확인된 경우 사업비 삭감,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가능 ※ 사업비 집행 점검 실시
※ 위법·부당한 집행 사례 발견 시 환수조치 및 지원 축소를 포함한 패널티 부여
- '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·관리 매뉴얼'에 따라, ① 법령 위반 ② 입시·학사·회계비리 등 수혜제한 사안에 대한 사업비 관리·조정
 - 대학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심의위원회(교육부) 심의 결과에 따라 대학의 부정·비리 발생 시 수혜 제한(사업비 감액 등) 조치
- 사업 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금 삭감 등이 있는 경우,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대학 자체 부담

Ⅲ. 기타 행정사항

□ 2차년도 사업비 확정 및 지급 일정(안)

- 자율혁신계획의 안정적 추진 및 사업비 조기 집행을 위해 연차평가를 상반기 내 실시하고 사업비를 조기 확정·지급

1차 사업비 지급 및 대학별 집행	'23.3.~
↓	
1차년도 연차평가 실시	'23.5~6월
↓	
사업비 확정 및 2차 사업비 지급	'23.7월
↓	
집행완료 및 정산	~'24.2월

□ 유지충원율 등 점검 안내

- '22~'24년 기본계획('22.2.)을 통해 안내한 유지충원율 점검(컨설팅, 적정규모화 권고 포함)은 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로 대체 적용
- 대학이 기 수립한 '23~'25년 적정규모화 계획은 철저 이행하여야 하며, 불이행 시 지원금 회수 등 패널티 적용

IV. 향후 일정

- 대학별 '23년 사업 협약 체결 및 1차 사업비 지급: '23.3월
- 1차년도 실적 보고서 제출 및 연차평가 실시 : '23.5~6월
- 사업비 확정 및 2차 사업비 지급: '23.7월
- 적정규모화 계획 이행 점검: '23.9월

❖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

□ **교육여건 지표별 상세 기준**

용어의 정의, 인정 기준 등은 2022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를 준용하되, 일부 상이한 부분은 아래 각 지표별 내용에 기재되어 있음

지표	산식
재학생 충원율	$\frac{\text{정원 내 재학생 수(명)}}{\text{학생 정원(명) - 학생 모집정지 인원(명)}} \times 100$ ※ 대학원 재학생 수 제외 ※ 학생정원 : 모집단위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(대학정보공시 지침서 4-라-1 학생정원 작성지침 준용) ※ 학생모집정지인원 : 학생정원이 산출되는 학년도의 계열별 입학정원에서 행정처분으로 학생 모집이 정지된 인원 ※ 재학생 충원율이 100% 초과 시에는 100%로 환산 ▶ 기준 : 각 학년도 4월 1일 기준 대학정보공시 자료 ▶ 공시항목 : 4-라-1. 재학생 충원율
전임교원 확보율	$\frac{\text{전임교원 수(명)}}{\text{교원 법정정원(명)}} \times 100$ ※ 학생정원 기준과 재학생 기준 중 전임교원 확보율 중 작은 값 ※ 전임교원 확보율 산출 시, 「대학설립·운영규정」 별표 1에 따라 계열을 구분하며, 5대 계열 중 의학계열(의학.치의학.한의학.수의학 등)은 제외 ▶ 기준 : 각 학년도 4월 1일 기준 대학정보공시 자료 ▶ 공시항목 : 6-나.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
교육비 환원율	$\frac{\text{총 교육비(원)}}{\text{등록금 수입총액(원)}} \times 100$ ※ 국립대 법인, 공립대는 117교 기준 표준화 ※ 사립대는 114교 기준 표준화 1) 총 교육비 - 국립대법인·공립대 : 대학회계(일반·법인회계 포함) + 발전기금회계 + 산학협력단회계 + 도서구입비 + 기계기구매입비(최근 3년 평균) - 사립대 : 교비회계 + 산학협력단회계 + 도서구입비 + 기계기구매입비(최근 3년 평균) 2) 등록금 수입총액 : '학부+대학원 등록금 수입 총액' 항목을 활용함 ▶ 기준 : 각 회계연도 결산 ▶ 공시항목 - 교육비 : 국립대법인·공립대는 대학정보공시 9-나-1. 학생 1인당 교육비, 사립대는 대학정보공시 9-나-2. 학생 1인당 교육비 - 등록금 수입액 : 12-다-1. 장학금 수혜현황의 학비감면 준수 여부 항목의 등록금 수입 총액